

서울특별시 패션봉제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

(홍국표 의원 발의)

의안 번호	1610
----------	------

발 의 년 월 일: 2024년 02월 05일

발 의 자: 홍국표 의원(1명)

찬 성 자: 김경훈, 김규남, 김길영, 김동욱, 김영옥, 김영철, 김용일, 김지향, 김춘곤, 김태수, 김형재, 김혜영, 남궁역, 남창진, 문성호, 박상혁, 박 석, 박영한, 박칠성, 서상열, 송경택, 신동원, 신복자, 옥재은, 윤영희, 이경숙, 이민석, 이민옥, 이병도, 이병운, 이봉준, 이상욱, 이상훈, 이성배, 이숙자, 이은림, 이종환, 이희원, 임규호, 임춘대, 장태용, 정준호, 최민규, 최유희, 최진혁, 황철규 의원(46명)

1. 제안이유

- 서울시의 패션봉제 산업은 미래 성장동력으로 손꼽히는 뷰티패션 산업의 토대가 되며,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는 도시형 제조업의 한 축을 이루고 있으나 가격경쟁력 저하, 신규 인력 유입의 단절 등으로 큰 위기를 겪고 있음.
- 이에 따라 패션봉제산업의 활성화와 고용 창출 및 지역경제 발전을 체계적·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패션봉제산업 육성을 위한 종합 계획 수립·시행, 지원 사업, 패션봉제산업 정책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을 규정한 조례안을 발의함.

2. 주요내용

- 가. 패션봉제산업 등 용어를 정의함(안 제2조).

나. 패션봉제산업 육성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(안 제5조).

다. 분야별 패션봉제산업 지원사업에 대해 보조할 수 있음(안 제7조).

라. 패션봉제산업 정책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을 규정함(안 제9조·제10조).

3. 참고사항

나. 예산조치 : 비용추계서 참조

서울특별시 패션봉제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패션봉제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서울특별시의 패션봉제산업을 활성화하고 고용 창출과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. “패션봉제”란 재봉틀이나 손으로 바느질하여 의류, 양말, 액세서리, 생활용품 등을 생산하는 것을 말한다.
2. “패션봉제산업”이란 패션봉제 제품의 기획·제조·판매·정보·서비스 등의 각 단계에 속하거나 이를 체계화한 산업을 말한다.
3. “패션봉제업체”란 패션봉제 제품을 전문적으로 생산하는 사업체를 말한다.

제3조(적용범위)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(이하 “시”라 한다)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주민 또는 시에 사업장을 둔 패션봉제산업 사업자에게 적용한다.

제4조(시장의 책무) ① 서울특별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은 패션봉제산업의 지원과 육성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발굴·추진하여야 한다.

② 시장은 패션봉제산업의 육성 및 지원 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민간기관 및 법인·단체 등과의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.

제5조(종합계획의 수립) ① 시장은 패션봉제산업의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발전을 위하여 5년마다 패션봉제산업 육성에 관한 종합계획(이하 "종합계획"이라 한다)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
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

1. 패션봉제산업 관련 현황과 전망
2. 패션봉제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 목표와 방향
3. 패션봉제 기술의 혁신과 첨단화 및 보급
4. 패션봉제산업 집적지 활성화
5. 패션봉제산업 지원사업
6. 패션봉제산업 생태계 조성과 활성화를 위한 관련 법·제도와 정책 개선
7. 그 밖에 패션봉제산업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

③ 시장은 종합계획의 추진을 위하여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·시행한다.

④ 시장은 매년 시행계획에 따른 실적을 평가하고, 그 결과를 다음연도 시행계획에 반영한다.

제6조(실태조사 등) ① 시장은 종합계획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내 패션봉제산업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.

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패션봉제산업의 실태조사를 할 경우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

제7조(패션봉제산업의 지원) ① 시장은 패션봉제산업 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.

1. 패션봉제 인력 양성을 위한 기술 교육 및 훈련

2. 패션봉제업체 생산품 판로개척 및 마케팅
 3. 패션봉제 시제품 제작과 공용장비 이용
 4. 패션봉제업체 기술 고도화와 작업설비 교체
 5. 패션봉제업체의 경영능력과 기술 수준 향상을 위한 상담 및 정보제공
 6. 패션봉제업체 작업환경과 처우 개선
 7. 패션봉제산업 활성화를 위한 협업 및 네트워크 구축
 8. 그 밖에 시장이 패션봉제산업 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
- ② 시장은 제1항 각호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창업 관련 기관, 법인 또는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보조하거나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다.

제8조(지원시설의 설치·운영 등) ① 시장은 패션봉제산업에 대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지원과 육성을 위해 지원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.

② 시장은 지원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.

제9조(패션봉제산업 정책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) ① 시장은 패션봉제산업 지원과 관련한 주요정책 및 계획과 그 이행에 관한 주요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패션봉제산업 정책위원회(이하 "위원회"라 한다)를 둘 수 있다.

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.

1.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
2. 연도별 시행계획의 추진 실적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
3. 패션봉제산업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

4. 지원시설의 설치 및 운영

5. 그 밖에 패션봉제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

제10조(위원회의 구성 등)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,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.

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되 패션봉제산업 관련 실·본부·국장은 당연직으로 한다.

1. 서울특별시의회 의원

2. 패션봉제산업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

3. 그 밖에 자문의 전문성 제고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

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 연임할 수 있다. 다만, 당연직 위원은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, 위촉직 위원 중 시의회 의원은 위촉 당시에 소속된 상임위원회의 재임기간으로 한다.

④ 제1항에 따른 위원 구성은 「양성평등기본법」 제21조제2항에 따라 특정 성별이 위촉직 인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. 다만, 같은 항 단서에 따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⑤ 위원회의 사무 총괄 및 회의록 작성을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되, 간사는 위원회를 주관하는 부서의 담당관이 되고 서기는 사무관이 된다.

⑥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⑦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「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」를 따른다.

제11조(사무의 위탁) ① 시장은 패션봉제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패션봉제산업의 육성 및 지원 사무를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.

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「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를 따른다.

제12조(표창) 시장은 패션봉제산업 활성화에 기여한 자나 모범적인 패션봉제업체 및 종사자에 대하여 「서울특별시 표창 조례」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.

제13조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서울특별시 패션봉제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

비용추계서

I. 비용추계 요약

1. 비용발생 요인

- 서울특별시 패션봉제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제6조(실태조사 등), 제7조(패션봉제산업의 지원), 제8조(지원시설의 설치·운영 등)는 서울시 소관부서 문의 결과 서울시에서 기 추진사업으로 비용추계 대상이 아니며, 제9조(패션봉제산업 정책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) 및 제10조(위원회의 구성 등)는 관련 비용 발생

※ 단, 제6조(실태조사 등), 제7조(패션봉제산업의 지원), 제8조(지원시설의 설치·운영 등)의 경우 해당 사업을 서울시에서 기 추진하고 있어 비용추계 대상 아님

〈서울시 패션봉제산업 관련 추진중인 사업 및 예산현황〉

(단위:천원)

관련 조·항	사업명	사업내용	예산('24년)	추진기간
제6조·제7조 (패션봉제산업의 지원)	의류제조업 작업환경 개선 지원	지원대상 : 서울관내 봉제업체 지원규모 : 총 570개 업체(목표) 지원내용 : 작업환경개선, 설비지원 지원금액 : 업체당 최대 9백만원 추진방법 : 자치구 공모 및 매칭	2,576,400 (4,520,000) *() 타제조업 포함	2019.~
제8조 (지원시설의 설치 운영 등)	서울패션허브 운영	대상지 : DDP패션몰 및 동대문종합시장 운영방법 : 민간위탁 위탁기간 : 21.4.1~ 24.3.31. 사업내용 : 서울패션산업 생태계 혁신 거점공간 운영	7,947,505	2021.~

(서울시 관련부서 제공자료)

2. 비용추계의 전제

가. 대상 : 제9조(패션봉제산업 정책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) 및 제10조(위원회의 구성 등)

나. 전제

- (인원) 당연직 1명, 시의원 1명 및 외부전문가 18명으로 총 20명 이내로 인원수 전제
- (횟수) 개최 횟수는 연 6회 이내로 전제 (서울시 뷰티산업 육성위원회 전년도 개최 횟수 참고)
- (수당) 위원회 참석수당 기본 단가로 전제

※ 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 시행규칙 제2조(수당의 종류 및 지급액) 참고

- 물가상승률 미반영

다. 추계기간 : 5년(2025년~2029년) 이후 계속 발생

라. 방법 :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·운영에 관한 조례 및 서울시 뷰티산업 육성위원회

구성·운영 계획에 근거하여 추계

3. 비용추계의 결과

○ 총 비용 = 91,000천원(연간 18,200천원)

(단위 : 천원)

연도		1차년도 (2025년)	2차년도 (2026년)	3차년도 (2027년)	4차년도 (2028년)	5차년도 (2029년)	합계
구분	○						
	소계(a)						
세입	제9조 (패션봉제산업 정책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)	2,000	2,000	2,000	2,000	2,000	10,000
	제10조 (지원시설의 설치·운영 등)	16,200	16,200	16,200	16,200	16,200	81,000
	소계(b)	18,200	18,200	18,200	18,200	18,200	91,000
□ 총 비용(b-a)		18,200	18,200	18,200	18,200	18,200	91,000

4. 덧붙이는 의견 : 운영위원 구성인원에 따라 소요비용 변동 가능

5. 작성자

시의회사무처 재정분석담당관

담 당 관 오희선

추계세제팀장 이정수

추 계 분 석 관 이홍래

☎ 02-2180-7952

e-mail : hong1004@seoul.go.kr

II. 비용추계의 상세내역

1. 비용요소

제9조(패션봉제산업 정책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) 및 제10조(위원회의 구성 등)는 신설된 내용으로
관련 비용 발생

2. 세부추계내역

○ 총 비용 = 91,000천원(연간 18,200천원)

(단위 : 천원)

연도		1차년도 (2025년)	2차년도 (2026년)	3차년도 (2027년)	4차년도 (2028년)	5차년도 (2029년)	합계
구분	○						
	소계(a)						
세입	제9조 (패션봉제산업 정책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)	2,000	2,000	2,000	2,000	2,000	10,000
	제10조 (지원시설의 설치·운영 등)	16,200	16,200	16,200	16,200	16,200	81,000
	소계(b)	18,200	18,200	18,200	18,200	18,200	91,000
□ 총 비용(b-a)		18,200	18,200	18,200	18,200	18,200	91,000

- 위원회 운영비 : 250천원 × 6회 = 1,500천원

- 위촉식 운영비 : 25천원 × 20명 = 500천원

- 참석수당 : 16,200천원

(지급인원) : 18명 (총 20명 중 당연직 1명, 시의원 1명 제외)

(개최횟수) : 연 6회

(산출방법) : 150,000원 × 18명 × 연 6회 = 16,200천원 ※ 위원회 참석수당 중 초과분 미반영